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8315호, 2021. 7. 20. 공포, 2022. 1. 21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1. 00. ~ 1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##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시행규칙 제8조”를 “시행규칙 제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 호

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

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 |  |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|--|--|
| 납부<br>의무자 | 조합의 명칭      |     |      |  |  |
|           |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|     |      |  |  |
|           | 대표자         | 성 명 | 생년월일 |  |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주 소 | 전화번호 |  |  |

|         |      |     |
|---------|------|-----|
| 통지 내용   |      |     |
| 대상 사업명  |      |     |
| 구분      | 기준시점 | 예정액 |
| 최초      |      |     |
| 직전연도    |      |     |
| 현재      |      |     |
| 그 밖의 사항 |      |     |

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(인)

귀하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8조(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의 통지) (생략)<br><br><u>&lt;신설&gt;</u> | 제8조(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의 통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br><br>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. |